

1. 개정이유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는 그 환경의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신청 및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한편,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경우 생산한 수산종자의 명칭·생산지·무게 등 그 생산정보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 확대에 따른 종류별 시설기준 등 재정비
(안 제13조 및 제16조 별표 3)

- 신설되는 허가의 종류를 추가하여 허가 신청 시 그 시설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의 시설기준도 마련

나. 유통종자의 생산정보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안 제32조제2항 신설)

- 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경우 종자의 생산정보(명칭·무게 등)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유통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마련

* 별표 4의2 : 종자의 명칭,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포장당 무게개수, 입식일, 허가번호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00. ~ 5.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뱃줄식”을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뱃줄식”으로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3에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산업 종류	생산 수산 종자의 종류	시설기준		
		규모	시설 및 장비	사이거리
2의2.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어류, 갑각류, 그 밖의 수산동식물의 종자	시설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 사육수 공급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적조 등 이상수괴 방지지설로서 액화산소공급장치, 산소발생기, 해수여과시설, 해수저장시설 및 지하해수공급시설 중 1개 이상을 확보할 것	-

별표 3 비고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후단의 신청인 제출서류 중 제2호 본문 “밭줄식”을 “해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밭줄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통 수산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

(제32조제2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 가. "표시"란 용기·포장 등에 적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 나. "용기·포장"이란 수산종자를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수산종자를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하며, 그 종류는 쫓말·그물망·마대·플라스틱·합성수지제·대형백(톤단위 크기의 Bag)·활어차량 등의 물품을 말한다.
- 다. "무포장"이란 최종생산자와 수산종자를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 없이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는 형태를 말한다.
- 라. "수산종자"란 「수산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액·알·치어·치패, 씨앗·포자 등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 마.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2. 표시대상 품종 및 대상자

- 가. 표시대상 품종: 주요 품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표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품종이더라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수산종자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구분	주요 품종
어류	가물치류, 가자미류, 금붕어류, 기름종개류, 꺾지류, 노래미류, 넙치류, 농어류, 능성어류, 대농갱이류, 도다리류, 돔류, 동자개류, 뚝지류, 메기류, 미꾸라지류, 미꾸리류, 민어류, 복어류, 불바리류, 붕어류, 비단잉어류, 산천어류, 송어류, 쏘가리류, 연어류, 열목어류, 은어류, 잉어류, 장어류, 전어류, 점농어류, 조기류, 조피볼락류, 쥐치류, 철갑상어류, 틸라피아류, 향어류, 그 밖의 어류
패류	가리비류, 가무락류, 고막류, 개량조개류, 개조개류, 굴류, 다슬기류, 맛조개류, 바지락류, 백합류, 북방대합류, 새조개류, 소라류, 왕우럭조개류, 우렁이류, 전복류, 진주조개류, 꼬끼리조개류, 피조개류, 홍합류, 그 밖의 패류
갑각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그 밖의 갑각류
해조류	감태류, 곰피류, 김류, 다시마류, 모자반류, 미역류, 청각류, 톳류, 파래류, 그 밖의 해조류
그 밖의 수산종자	갑오징어류, 갯지렁이류, 낙지류, 문어류, 성게류, 우렁쉥이류, 자라류, 해삼류, 그 밖의 수산종자

나. 표시 대상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에 따라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산종자를 보급하려는 자는 제외하나, 연구개발이 아닌 수산종자생산업 목적으로 보급(무상보급 포함)하려는 자는 표시해야 한다.

3. 표시사항

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에 관한 사항

1) 수산종자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관한 사항

1) 수산종자의 명칭(수산식물종자의 경우는 품종의 명칭)

2) 수산종자의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3) 전(全)단계 생산출처, 입식일(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날짜) 및 채묘일(採苗日) 등을 포함한 수산종자의 생산이력 표시

4)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해당)

5)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번호(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해당)

6)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해당)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

7)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만 해당)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유전자변형 품종만 해당)

4. 용기·포장의 기준

가.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사용 시에는 유독·유해물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깨끗이 세척하여 불순물 등이 잔류·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용기·포장은 그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하여 사용해야 하고, 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은 용기·포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표시기준

가. 공통사항

- 1)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는 경우에는 용기·포장 단위별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2) 수산종자는 혼합하지 않고 품종별로 구분하여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고, 같은 품종이더라도 생산출처 및 입식일 등이 다를 경우에도 표시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 1) 용기·포장 등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산종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인쇄해야 한다.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기·포장 등에 직접 인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표시방법은 제6호에 따른다.

가) 라벨: 표시면(가로 8cm×세로 3cm 이상 크기), 묶는부분(묶을 수 있도록 크기는 자유롭게 사용)

나) 스티커 또는 꼬리표: 가로 5cm×세로 8cm 이상 크기로 하고, 꼬리표는 철사끈 등으로 부착

다) 그물망·마대·플라스틱·합성수지제: 크기는 자유롭게 사용

라) 대형백: 크기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포장재 외부에 대표하여 일괄로 표시

마) 활어차량(일반차량, 선박 포함): 가로 15cm×세로 10cm 이상 크기의 표시판을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다.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1) 꽃말 또는 표시판 등을 사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이 경우 표시방법은 제6호에 따른다.

가) 꽃말: 표시면(가로 12cm×세로 6cm 이상 크기), 꽃이부분(10cm 이상 크기)

나) 표시판: 가로 12cm×세로 6cm 이상 크기

다) 무포장(자연·벌크 형태 포함): 수산종자를 품종별로 판매·보급하는 형태에 따라 꽃말·표시판으로 외부에 그 품종을 대표하여 일괄로 표시하거나 라벨·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등 그 유통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라. 포장재별 표시 예시 및 요령

- 1) 표시 예시

가) 라벨

유통 수산물 종자 표시 사항	수산물종자 명칭	넙치 또는 광어(넙치)	생산출처, 입식일 및 채묘일	홍길동수산물, 2025.1.1.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시·도·군·구명, 생산(2025) 또는 포장(2025.1)	수산물종자생산업 허가번호	제2025-001호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1kg, 1톤, 1만마리, 10틀(100m/1틀)	-	-
	해당 되는 경우 에만 표시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2025.1.(홍길동)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AQ-2025-1 또는 AQ-제1호	
		수산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08-0001-2025-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해당없음	
		질병검사 등 건강도(의무표시 미대상)	흰반점병(음성), 옥시테트라사이클린(불검출)	

나) 스티커 및 꼬리표

유통 수산물종자 표시사항		
수산물종자 명칭		넙치 또는 광어(넙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시·도·군·구명, 생산(2025) 또는 포장(2025.1)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1kg, 1톤, 1만마리, 10틀(100m/1틀)
생산출처, 입식일 및 채묘일		홍길동수산물, 2025.1.1.
수산물종자생산업 허가번호		제2025-001호
해당 되는 경우 에만 표시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2025.1.(홍길동)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AQ-2025-1 또는 AQ-제1호
	수산물종자 품종 생산· 수입 판매 신고번호	08-0001-2025-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해당없음
	질병검사 등 건강도 (의무표시 미대상)	흰반점병(음성), 옥시테트라사이클린(불검출)

다) 표시판

유통 수산물종자 표시사항				
수산물종자 명칭	넙치 또는 광어(넙치)	해당 되는 경우 에만 표시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2025.1.(홍길동)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시·도·군·구명, 생산(2025) 또는 포장(2025.1)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AQ-2025-1 또는 AQ-제1호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1kg, 1톤, 1만마리, 10틀(100m/1틀)		수산물종자 품종 생 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08-0001-2025-1
생산출처, 입식일 및 채묘일	홍길동수산물, 2025.1.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해당없음
수산물종자생산업 허가번호	제2025-001호		질병검사 등 건강도 (의무표시 미대상)	흰반점병(음성), 옥시테트라사이클린(불검출)

2) 표시항목별 표시요령

가) 수산종자 명칭: 분류할 때 종(種)을 나타내는 품종명으로 “넙치”로 표시하거나 방언을 표시할 경우에는 종명(種名) 표시와 함께 “광어(넙치)”로 표시

나) 생산지,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1) 생산지: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으로 표시

(2)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중 하나만 표시하거나 함께 표시 [예: 생산(2025) 또는 포장(2025.1.)]

다) 포장당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1) 포장당 무게, 개수: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는 용기·포장 단위별 무게 또는 수산종자 마릿수(개수)를 표시(예: 1kg, 1톤, 1만마리 등)

(2) 씨줄길이: 해조류의 경우 1개(틀)의 씨줄길이가 100m 또는 200m이므로 씨줄길이를 함께 표시 [예: 10틀(100m/1틀) 또는 10틀(200m/1틀)]

라) 생산출처, 입식일 및 채묘일

(1) 생산출처: 수산종자를 생산한 업체명을 표시(예: 홍길동수산)

(2) 입식일 및 채묘일: 수산종자생산시설에 새로운 수산종자를 들인 입식일을 표시하거나 채묘일을 표시(예: 2025.1.1.)

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번호: 수산종자생산업자의 경우만 표시(예: 제2025-001호)

바)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 수입 수산종자의 경우만 표시(예: 2025.1월, 홍길동)

사)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만 표시(예: AQ-2025-1)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만 표시(예: AQ-제1호)

아) 수산식물종자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번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만 표시(예: 08-0001-2025-1)

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유전자변형 품종만 표시(예: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차) 질병검사 등 건강도: 건강도에 대한 의무표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산종자를 판매·보급하려는 자가 자체 표시를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의 건강도가 나타나도록 “흰반점병(음성)” 또는 “옥시테트라싸이클린(불검출)” 등 검사 결과를 명확히 표시. 이 경우 건강도에 대한 검사기관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또는 제10조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또는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기관 중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대한수의사회
- (2) 병성감정실시기관: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
- (3) 수산생물검역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

6. 표시방법

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 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나. 생산자·소비자 등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면에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부착해야 한다.

라.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하고, 글자 비율(장평)은 90퍼센트 이상, 글자 간격(자간)은 -5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면의 크기가 작아 글씨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포인트 보다 작게하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7. 그 밖의 사항

가. 이 별표에서 의무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외에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생산정보를 추가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제5호(표시기준) 및 제6호(표시방법)에서 정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다(예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감축량 등).

나. 유통 수산종자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맞줄식</u>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2. <u>해상축제식</u> 수산종자생산업, <u>맞줄식</u>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생 략)	제32조(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
<u><신 설></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4의2와 같다.</u>